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전파법」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2011.01.21.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02호
개정 2011.06.08.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호
개정 2012.3.19.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개정 2012.9.2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6호
개정 2013.7.1.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사’라 함은 기자재를 설계하여 직접 제작하거나 상표부착방식에 따라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로서 해당 기자재의 설계·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 ‘사후관리’라 함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 법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모델’이란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이 동일하고 기능이 유사한 제품군 중 표본이 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4.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5. ‘무선 송·수신용 부품’이란 차폐된 함체 또는 칩에 내장된 무선주파수의 발진, 변조 또는 복조, 증폭부 등과 안테나(안테나 단자 포함)로 구성된 것으로 시스템에 하나의 부품으로 내장되거나 장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세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 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7. ‘디지털 장치’라 함은 9kHz 이상의 타이밍 신호 또는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으며 디지털 신호로 동작되는 기자재로서 제6호의 정보기기 이외의 기자재를 말한다.
-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① 영 제7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2와 같다.

③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자기시험 적합등록’ 이라 한다) 대상기자재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 적용기준 :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EMC)기준

2. 개별 적용기준

가. 무선분야(방송분야 포함) : 법 제37조, 제45조, 제47조의2 또는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나. 유선분야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세부 기술기준

다. 전자파흡수율(SAR)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기자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별로 적용되는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서부터 별표 3에 표시된 바를 따른다.

③ 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에 대한 시험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적합인증

제5조(적합인증의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적합인증신청서
2.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 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7.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② 제1항에 따라 다수의 공급업체로부터 명칭·형식기호·기능(성

능) 등 기구적·전기적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부품의 목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저항 등 회로소자인 경우 기존 회로소자와의 전기적 특성 비교표
2. 부품이 시스템의 구성품인 경우 시험성적서

③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에 대한 그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최초로 적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최초의 적합등록 및 잠정인증 신청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합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5조의 적합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 서류의 적정성
2.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의 적절성
3.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6. 인증연월일

제3장 적합등록

제8조(적합등록의 신청 등) 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합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적합등록신청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3.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대상기자재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등록 신청절차를 따를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 구성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의 구성품임을 확인받아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적합등록필증의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필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 3. 등록번호
-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 6. 등록연월일

제10조(적합등록자가 비치하여야 할 서류 등) ①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 제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별표 2와 별표 3의 대상기자재 중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적용한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 가.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나. 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 다.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라. 자기 시험성적서 (제3조제3항의 대상기자재에 한한다)
 - 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적합등록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 바. 국제전기기기인증기구(IECEE) CB Scheme에 따른 CB인증서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 6호 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국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 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다만,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상기자재 중 제 4조제1항 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 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 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7.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생모델을 등록한 경우 그 목록과 전기적

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

8. 제16조제1항제2호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원장은 사후관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적합등록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잠정인증

제11조(잠정인증의 신청)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 기술설명서(한글본)

가. 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 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5.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 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 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 대리인 지정서 :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 (위임)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잠정인증의 심사 등) ① 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와 제품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2.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제7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법 제9조에 따른 주파수분배의 적합성 여부
4. 사용지역과 신청자의 신청 유효기간의 적정성 여부

③ 제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적합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기구(ITU, ISO/IEC 등)의 표준
2. 한국방송통신표준 및 한국산업표준
3. 방송통신 관련 표준
4. 기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5. 국제적으로 신기술인 경우 신청자가 제안하는 기준

제13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①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의 명칭·모델명
3. 인증번호
4. 형식기호(법 제45조의 기술기준을 적용받는 기자재에 한함)
5. 제조자 및 제조국가
6. 유효기간
7. 기타 허용 조건

②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른 일정한 기한은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시행된 날 또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14조(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국·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 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관련 공무원

6.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8조의2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 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 ④ 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 등

제15조(변경사항의 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4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소자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2. 완제품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하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의 제거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변경사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구현 또는 추가함으로써 제4조 적합성평가기준의 시험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범용 정보기기는 제외한다.

②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적합성평가의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모델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가.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나.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 기타 상호명·성명·주소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 적용기준만 적용되는 기자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되지 아니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다.

1. 저항(Resistor), 인덕터(Inductor), 캐패시터(Capacitor)를 대치하는 경우

2. 다이오드(발광다이오드 포함)를 대치하는 경우
3. 전기적 회로는 동일하고 전력용량(Wattage)을 축소하는 경우

제16조(변경사항의 신고) ① 제7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2.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9조에 따라 적합등록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적합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3. 제1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등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용량만이 변경된 기자재

제17조(변경사항의 처리 등) ① 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6장 적합성평가의 면제 등

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영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의 범위와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을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시험·연구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의 기자재 : 100대 이하(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전시회, 국제경기대회 진행 등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산업체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반출하는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 : 면제확인 수량
 - 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사. 외국에 납품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는 선박에 설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기자재와 외국으로부터 도입, 임대, 용선 계약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설치된 기자재등과 또는 이를 대치하기 위한 동일기종의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 1대
 - 자.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 또는 이에 준하는 협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조립하거나 반입하는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 면제확인 수량
 - 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이하
 -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별표2 제6호 다목)으로 조립한 컴퓨터(다만, 별표 6의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것에 한한다.)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국내에서 제조하여 외국에 전량 수출할 목적의 기자재

나. 외국에 재수출할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다. 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
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② 영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상기자재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법 제58조의2제8
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 적용기준이 일부
같은 기자재 : 법 제58조의2제1항 각 목 어느 하나의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시험

2. 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법 제47조의3의 전자
파적합성기준과 동일한 기자재 : 법 제47조의3의 전자파적합성기
준에 따른 시험

제19조(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2.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1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

판매도약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18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 3. 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1항 제1호 아목과 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적합성평가의 일부가 면제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한다.
- ⑥ 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제20조(적합성평가 절차 및 서류의 간소화) ①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장착한 기자재의 경우,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적합성평가 당시 적용된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평가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77조의4의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용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합인증의 경우 : 적합인증서의 교부
2. 적합등록의 경우 : 적합등록필증의 교부

제7장 조사 및 조치

제21조(사후관리 등) ① 법 제71조의2에 따라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로부터 당해기자재를 제출받거나 또는 유통 중인기자재를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7조의11제1항제4호에 따라 시험기관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한기자재로서 해당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원장에게 보고한 경우
 2.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 결과를 제출한 경우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기자재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대상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입수량은 3대 이하로 한다.

1. 요구목적
2. 기자재 명칭
3. 모델명
4. 적합성평가(인증, 등록) 번호
5. 수량
6. 제출기한
7. 제출장소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구매한 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제출받은 기자재는 사후관리결과 통보 시 반환한다.
2. 구매한 기자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조치 시 제시할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2조(사후관리 시험 등) ①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을 당시의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23조(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법 제58조의2제6항의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제24조(적합성평가의 해지)**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판매 또는 수입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적합성평가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서의 재발급) 원장은 제7조 및 제9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적합인증서(또는 적합등록필증 및 잠정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손상되어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26조(처리기간)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즉시처리

-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 나.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 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1항 및 제15조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라.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 마.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 바. 제28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 1일 이내 처리 :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 5일 이내 처리

가.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4. 60일 이내 처리 :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 ② 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리인의 지정) 적합성평가 신청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제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적합성평가 신청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의 신청
2. 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 신청
3. 제11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4. 제16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5. 제2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6. 제25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 제28조(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①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02호, 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방송통신 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이 고시 시행 이후 새로이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기자재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성평가를 유예한다.

제5조(다른 고시의 폐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제2010-51호)’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09-50호)’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호, 2011.6.0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2012.3.19.>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 분야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라목,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3조제3항 별표 3의 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신고 등,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자재,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밖의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라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인증신청 건에 대하여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표시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16호, 2012.9.24.>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부칙 제1조제2항의 본문 중 제3조 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 칙<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3-5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성평가표시 적용예)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 적용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기자재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심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는 2013년 9월 30일 까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제3조제1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1. 무선전화정보 자동수신기	가.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가 동작하는 것	○	○		
	나. 무선전화정보신호에 전파를 수신할 때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다. 무선전화정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 확성기 및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것	○	○		
2. 무선방위 측정기	가. 의무 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나. 임의 비치용	1) 중파무선방위 측정기	○	○	
		2) 중단파무선방위 측정기			
		3) 검용무선방위 측정기			
3. 의무항공기국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기기		○	○		
4. 정보자동전화장치		○	○		
5. 단측파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용 무선전화의 송신 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기	가. 항공이동업무의 기기	○	○		
	나. 육상이동업무의 기기				
	다. 해상이동업무의 기기				
6. 선박국용 레이다 기기	가. 국제항해용레이더	1) 표시면의 유효직경 32cm이상	○	○	
		2) 표시면의 유효직경 25cm이상 32cm미만			
		3) 표시면의 유효직경 18cm이상 25cm미만			
	나. 국내항해용 레이더	○	○		
	다. 국내 소형선박용 레이더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7. F3E 및 G3E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양방향무선전화장치		○	○		
8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가. 선박국용	○	○		
	나. 해안국용				
9.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기		○	○		
10. 해상이동업무용 디지털선택호출 장치의 기기	가. MF·HF송수신장치	○	○		
	나. VHF송수신장치				
11.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	가. MF전용수신기	○	○		
	나. MF·HF전용수신기				
	다. VHF전용수신기				
12. 네비텍스수신기		○	○		
13. 수색구조용 위치정보 송신장치의 기기	가.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	○	○		
	나.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송신기				
14.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기	가.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부착형	○	○		
	나.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미부착형				
15. 자동 식별장치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	○		
	나.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				
16.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주파수공용방식의 기기	○	○		○
	나. 주파수공용방식 이외의 기기				
17.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 및 라디오로봇트의 기기			○		
18. 라디오부이의 기기			○		
19.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 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에 따 른 무선설비의 기기		○	○		○
20. 고주파전류를 이용하는 의료용설비의 기기		○	○		
21. 무선표출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22.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 기 타	○	○		
23.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 기 타	○	○		
24.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 기 타	○	○		
25.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육상이동국의 송수신장치	○	○		○
	나. 기지국의 송수신 장치 및 중계장치	○	○		
	다. 컴퓨터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라. 핸드오프용 채널변환 장치	○	○		
	마. 기 타	○	○		
26. 900MHz대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27. 위성휴대통신무선국용 무선설비의기기		○	○		○
28.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29.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가. 육상용	○	○		○
	나. 해상용	○	○		○
	다. 중계장치 및 이동중계국의 송·수신 기기	○	○		
30.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1.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2. 아미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HF대 기기	○	○		
	나. VHF/UHF대 기기 등				
33. 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3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6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4.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		
35. 무선CATV용 무선설비의 기기	가.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25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36.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7.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	○		
38.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기		○	○		○
39.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기		○	○		
4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가.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	○		
	나.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	○		
	다.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	○		
	라.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	○		
	마.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	○		○
	바. 중계용 무선기기	○	○		
	사.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	○		
	아.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	○		○
	자. 이동체식별용 무선기기	○	○		
차.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41. RFID/USN용 무선기기	가. 900MHz 대역 사용 기기	○	○		○
	나. 433MHz 대역 사용기기				
	다. 13.56MHz 대역 사용기기				
42. 체내이식 무선 의료기기	400MHz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4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가.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나. 10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4. 코드없는 전화기	가.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	○	○	○
	나.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5. UWB 및 용도 미지정기기	가.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	○		
	나. 57GHz~6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46. 단말기기류	가. 전화기(헤드셋 전화기 포함)	○		○	
	나. 다기능 전화기 (시계, 라디오, TV 또는 도어폰 등 전화기능과 관계없는 기능이 추가된 전화기)	○		○	
	다.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 (인터넷전화기, 전화기용커넥터, 회의용 브릿지, 회선어댑터, 번호표시기, 착신표시기, 통화감 지기, 통화시간기록기, 자동다이얼기, 장거리 자동 전화발신제어기, 착신전환기, 자동응답기 등)	○		○	
	라. 팩시밀리기기 (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 포함)	○		○	
	마. 영상전화기	○		○	
	바.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기 (홈오토메이션, 비디오도어폰 등)	○		○	
	사. 공중전화기	○		○	
	아. 공중전화회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	
	자. 다이얼링 기능이 없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차. 다이얼링 기능이 있는 모뎀(카드식 포함)	○		○	
	카. 팩시밀리 모뎀(데이터겸용 카드식 포함)	○		○	
	타. 근거리데이터채널모뎀(원격통신용, LADC)	○		○	
	파. 무선 모뎀	○	○	○	
	하.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 (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 취급기 등)	○		○		
너. PC에 장착되는 정보통신 단말기기	○		○		
더. 영상전송기(사진전송기, 화상회의기기 포함)	○		○		
러. 코덱	○		○		
머. 다기능보조기기(자동텔레마케팅 다이얼링방식 기기)	○		○		
버. 아날로그 통신망에 사용되는 데이터보호기기	○		○		
서. 비상통보기기 (화재, 가스, 침입, 장치고장 등의 통보를 위한 장치 등)	○		○		
어. 원격검침용 통신기기	○	○	○		
저. 원격제어기기	○	○	○		
처. 통신설비 유지 보수용 시험기기	○		○		
커. 회선장애 감시기기	○		○		
터. ISDN 망종단기기(NTE)	○		○		
퍼. ISDN 단말기기 (ISDN전화기, 터미널어댑터, 인터페이스카드 등)	○		○		
허. ISDN 다기능기기 (ISDN영상기기, ISDN 복합단말기기, G4팩시밀리, SDN라우터 등)	○		○		
고. 디지털가입자회선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ADSL, VDSL 모뎀 등)	○		○		
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는 기타 디지털 단말장치 (VoIP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한 인터넷전화기, 라우터 등)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과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 (IPTV 셋톱박스 등)	○		○	
	로.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 (디지털CATV 셋톱박스 등)	○		○	
	모. 유선방송설비에 접속되는 데이터통신용 단말장치(케이블모뎀 등)	○		○	
	보. 수동형 관선로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 장치(EPON, GPON, 광모뎀 등)	○		○	
	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단말기기류	○		○	
47. 시스템류	가. 전화교환기(회선감시 및 응답용 콘솔 포함)	○		○	
	나. 데이터교환기	○		○	
	다. 전화/데이터 겸용 교환기(ISDN교환기 포함)	○		○	
	라. 구내교환기(PBX)	○		○	
	마. ATM교환기	○		○	
	바. 키폰시스템	○		○	
	사. 키폰과 구내교환기(PBX)의 혼합시스템	○		○	
	아. 자동음성처리시스템(카드식 포함)	○		○	
	자. 전자사서함시스템(카드식 포함)	○		○	
	차. 자동착신방식(DID)기능이 있는 멀티미 디어 서버	○		○	
	카. 기간통신망에 자가통신설비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비	○		○	
	타. 방송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호출장치	○		○	
	파.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시스템류	○		○	
48. 회선종단 장치류	가. 채널서비스유닛(CSU)기능을 가진 기기	○		○	
	나. 채널서비스유닛(CSU)이 내장된 디지털 통신장치	○		○	
	다. 채널서비스유닛(CSU)에 접속되는 다중화장치, 채널뱅크 또는 디지털통신장치	○		○	
	라. 원격고장진단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서비스용 부속기기	○		○	
	마. 광통신용 회선종단장치	○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바. 근거리(LAN), 원거리(WAN) 전송장치 (통신망에 직접 접속되는 기능이 있는 장치에 한함)	○		○	
	사. PCM단국장치	○		○	
	아.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회선종단 장치류	○		○	
49. 종합유선 방송국 주 전송장치류	가. 진폭변조기	○		○	
	나. 디지털변조기 (64QAM, 256QAM, QPSK)	○		○	
	다. 텔레비전 신호처리기 (디지털방식, 디지털지상파 재전송용 변조기))	○		○	
	라.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종합유 선방송국 주전송장치류	○		○	
50. 방송 공동 수신설비류	가. 증폭기	○		○	
	나. 레벨조정기	○		○	
	다. 광 송신기 및 수신기	○		○	
	라. 광증폭기	○		○	
	마.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	○		○	
	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DtoA)	○		○	
	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아.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	○		○	
	자. 에프엠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		○	
	차.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방송 공동 수신설비류	○		○	

[별표 2]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2항 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바목에 따른 기기와 동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가. 산업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나. 과학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다.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라. 가정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			
2.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	가. 자동차 기기류	○			
	나.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다. 자동차 장착용 디지털 기기류 (자동차 전장품)	○			
3.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	가. 텔레비전수상기	○			
	나. 영상모니터	○			
	다. 비디오테이프 플레이어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 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 ※ 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라. 비디오카메라	○				
	마. 튜너	○				
	바. 편집기	○				
	사. 디스크플레이어	○				
	아. 라디오수신기	○				
	자. 앰프	1) 앰프	○			
		2) 앰프내장형스피커				
	차. 리시버	○				
	카. 음성기록계	○				
	타. 음성플레이어	○				
	파. 오디오시스템	○				
	하. 전자악기	○				
	거. 위성방송수신기	○				
	너. 비디오게임기구	○				
	더. 비디오폰	○				
	러. TV영상프로젝터	○				
	며. 음질조절기	1) 음질조절기	○			
		2) 이퀄라이저				
	버. 오디오프로세서	○				
	서. 신호변환장치(AD/DA)	○				
	어.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저. 컴프레서 게이트	○				
	쳐. 전자시계	○				
	커. CCTV 카메라	○				
	터. 영상전송기	○				
	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허. 영상기록계	○				
	고. A/V 신호수신기	○				
	노. 영상프로세서	○				
	도.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로. 턴테이블	○				
	모.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4.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 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 정격입력이 10kW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 ·자외선방사 피부관리 기, 전기마사지기, 전기 스팀사우나기기, 반신 욕조 및 발욕조 중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인 것	가. 전기청소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2.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진공청소기· 물흡입청소기 2) 전기바닥청소기 3) 전기표면세척기 4) 스팀 청소기	○			
	나.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1) 전기전조다리미 2) 스팀다리미 3) 바지 프레스기 4) 주름펴기 5) 다림질 프레스	○			
	다.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식기세척기 2) 전기식기건조기	○			
	라. 주방용전열기구	1) 전기레인지 2) 전기오븐기기 3) 전기저치식그릴 4) 전기호브 5) 전기콘로 6) 전기가열기 7) 전기토스터 8) 전기프라이팬 9) 전기휴대형그릴 10) 전기고기구이기 11) 와플기기 12) 핫플레이트	○			
	마.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 전기세탁기 (의류, 옷감 세탁용 으로 전동기의 정격 입력이 1kW이하인 것) 2) 전기탈수기 (드럼속도 50m/s 이 하인 것)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바. 모발관리기	1) 모발건조기	○			
		2) 전기머리인두				
		3) 모발말개				
	사.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1) 전기보온기	○			
		2) 전기주온기				
		3) 전기온장고				
	아. 주방용 전 동 기기	1) 주서	○			
		2) 주서믹서기				
		3) 후드믹서				
		4) 전기녹즙기				
		5) 크림거품기				
		6) 계란반죽기				
		7) 혼합기				
		8) 버터제조기				
		9) 압즙기				
		10) 슬라이스기				
		11) 전기칼같이				
		12) 전기깡통따개				
		13) 전기칼				
		14) 커피분쇄기				
15) 빙삭기						
16) 전기고기갈개						
17) 전기국수제조기						
18) 전기육절기						
19) 전기골절기						
20) 기타 주방용전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에 한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자. 전기액체가열 기기	1) 전기밥솥	○			
	2) 전기보온밥솥				
	3) 전기주전자				
	4) 전기냄비				
	5) 전기물끓이기				
	6) 전기약탕기				
	7) 커피메이커				
	8) 전기스팀쿠커				
	9) 달걀조리기				
	10) 우유가열기				
	11) 젓병가열기				
	12) 요구르트제조기				
	13) 증기조리기 등 기타 액체가열기기				
차.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1) 전기방석	○			
	2) 전기요				
	3) 전기매트				
	4) 전기카펫				
	5) 전기장판				
	6) 전기침대				
카. 전기찜질기		○			
타. 발 보온기	1) 발보온기	○			
	2) 전기손난로				
파. 전기온수기	1) 전기온수기 (끓는 점 이하의 온 도로 유지하는 것)	○			
	2) 순간온수기				
하. 전기냉장·냉 동기기 (전동기의 정격입력이 1kW 이하인 것)	1) 전기냉장·냉동기기	○			
	2) 제빙기				
	3) 아이스크림프리저				
	4) 전기냉수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거. 전자레인지 (300MHz~30GHz 대역의 전파를 사용 하는 것을 말함)		○			
너. 가정용 전동채봉기		○			
더. 전기충전기 (출력전압이 50V 이하인 것)		○			
러. 전기건조기	1) 회전형 전기건조기	○			
	2) 손건조기				
	3) 전기건조기				
머. 전열기구	1) 전기스토브	○			
	2) 전열보드				
	3) 전기라디에이터				
	4) 전기온풍기				
	5) 축열식전기난방기				
버. 전기맛사지기		○			
서. 냉방기 및 제습기 (열교환펌프 또는 에어컨 그 밖의 컴 프레서가 내장된 것)	1) 냉방기	○			
	2) 제습기				
어. 유체펌프 (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이고 정 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만 해당 되며, 진공펌프, 오 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기구에 부 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1) 유체펌프	○			
	2) 전기온수펌프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저. 전기가열기기	1) 납땜인두	○			
	2) 납땜제거인두				
	3) 권총형납땜기				
	4) 열가속성도관용접기				
	5) 필름접착기				
	6) 플라스틱절단기				
	7) 페인트제거기				
	8) 가열총				
	9) 전기조각기				
저. 사우나기기	1) 전기스팀사우나기기	○			
	2) 전기사우나기기				
	3) 사우나기기용 전열기				
	4) 스팀사우나용 전열기				
커.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1) 관상어용 식물용 히터	○			
	2) 동물부화 사육용 히터				
	3) 관상어용 기포 발생기				
	4) 관상용 전기어항				
터. 기포발생기기		○			
퍼. 전격살충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 제외)		○			
허. 전기욕조	1) 소용돌이 욕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욕조기포 발 생기 포함)	○			
	2) 반신(전신)욕조				
	3) 발욕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고. 공기청정기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			
노. 자동판매기		○			
도. 팬, 레인지후드 (정격입력이 500W 이하인 것에 한하며 기계기구에 부착 되는 특수 구조인 것 제외)	1) 선풍기	○			
	2) 송풍기				
	3) 환풍기				
	4) 레인지후드				
	5) 전기냉풍기				
로. 화장실용 전기기기	1)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	○			
	2) 전기변좌				
	3) 오물흡입기				
모. 가습기		○			
보. 전기분무기		○			
소. 전기소독기		○			
오. 음식물처리기 (음식물처리기 중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에서 제조·수 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조 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1) 물수건포장기	○			
	2) 물수건마는기기				
초. 과일껍질깎기		○			
코. 감자탈피기		○			
토. 전기정미기		○			
포. 전기빵자르개		○			
호. 전기용해기	1) 왁스용해기	○			
	2) 초코렛용해기				
	3) 파라핀용해기				
구. 애완동물 목욕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누. 이미용기	1) 전기머리손질기	○		
		2) 두피모발기			
		3) 샴푸기기			
		4) 모발가습기			
		5) 손톱정리기			
		6) 전기면도기			
		7) 전기이발기			
		8) 안면사우나기			
	두. 전기주류숙성기	○			
	루. 전기시계	○			
	무.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1) 적외선방사 피부 관리기	○		
		2) 자외선방사 피부 관리기			
	부.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3) 전기이발용의자	○		
		4) 전동침대			
		5) 전기온열의자			
	수. 컴프레서	○			
	우. 전기온수매트	1) 전기보일러	○		
		2) 전기온수매트 및 전기온수침대			
	주. 구강청결기	3) 전동칫솔	○		
		4) 구강세척기			
추. 전기분수기	○				
쿠. 투영기	1) 슬라이드 투영기	○			
	2) 필름스트립 투영기				
	3) OHP				
	4) 필름 투영기				
투. 해충퇴치기	1) 해충퇴치기	○			
	2) 전기포충기				
푸. 전기집진기	○				
후. 착유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그. 서비스기기	1) 전기광택기	○			
		2) 수하물보관기				
		3) 지폐교환기				
		4) 동전교환기				
	느. 전기에어커튼		○			
	드.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르. 폐열 회수 환기장치		○			
	므. 게임기구	1) 레이저사격기기	○			
		2) 운전시물레이션 게임기구				
		3) 인형뽑기				
		4) 다트판				
		5) 농구게임기				
		6) 기타 게임기기				
	브. 전동형 롤스크린		○			
	스. 전기훈증기	1) 전기훈증살충기	○			
		2) 전기방향확산기				
	으. 수도동결방지기		○			
	즈. 보플제거기		○			
	츠. 산소이온발생기		○			
	크. 전기정수기	1) 전기정수기	○			
2) 전기이온수기						
트. 초음파세척기	1) 초음파세척기	○				
	2) 과일야채세척기					
프.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흐. 전기작동도어록		○				
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니. 전동공구 (정격입력이 1.5kW 이하인 것에 한함)	1) 전기드릴	○			
		2) 전기드라이버				
		3) 전기그라인다				
		4) 포리셔				
		5) 전기샌더				
		6) 전기원형톱				
		7) 전기햄머				
		8) 전기금속가위				
		9) 전기테이퍼				
		10) 전기왕복톱				
		11) 전기진동기				
		12) 전기체인톱				
		13) 전기대패				
		14) 전기잔디깎기				
		15) 전기못총				
		16) 트리밍기 등 기타 전동공구				
		17)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5.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 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 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 는 장치	가. 일반 조명기구	1) 형광등기구	○			
		2) PLS조명기구				
		3) 백열등기구· 전 기스탠드				
		4) LED등기구				
		5) 할로젠등기구 (150W 이하의 것)				
		6) 고압방전등기구 (150W 이하의 것)				
		7) 투광조명기구 (150W 이하의 것)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나.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1) 램프용 자기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의 것)	○			
		2)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정격입력이 1000W 이하의 것)				
		3) 네온변압기				
		4) 네온 변압기 조명기구용 컨버터 (LED 전원공급장치 포함)				
	다. 안정기내장형 램프 (LED용 포함)		○			
	라. 기타 조명기구	1) 크리스마스 휴리용 조명기구	○			
2) 충전식휴대전등						
3) LED 모듈(램프)						
6. 정보·사무 기기류 :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기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	가. 컴퓨터류		○			
	나. 컴퓨터 주변 기기류	1) 입력장치류 (스캐너, 키보드 등)	○			
		2) 출력장치류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3) 외장형 저장장치류 (외장형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등)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주변 기기류				
	다.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1) 보드류	○			
2) 저장장치류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3) 전원공급기 및 직류전원장치 (각 분류의 직류전원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에 사용 되는 것 포함)	○				
		4) 콘트롤러류					
		5) 기타 컴퓨터 내장 구성품류					
	라. 사무기기류	1) 무정전 전원장치 (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2) 코팅기					
		3) 지폐계수기					
		4) 전자저울					
		5) 금전등록기					
		6) 어학실습기					
		7) 문서세단기					
		8) 천공기					
		9) 채단기					
		10) 제본기					
		11) 전자철판 및 보드					
		12) 동전계수기					
		13) 전동타자기					
14) 전기소자기							
15) 교통카드충전기							
16) 번호표발행기							
	마. 기타 정보·사무 기기류	○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7. 디지털 장치류 : 제2조제7호에 따른 기기		○			
8. 전선로에 주파수가 9kHz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 설비의 기기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이용설비는 제외)		○			
9.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		
10.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1) 전자식스위치 (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것)	○			
	2) 리모트콘트롤스위치				
	3) 시간지연스위치				
	4) 조광기				
	5) 전자개폐기 (정격전류가 300A 이하인 것)				
	6) 온도조절기(전자식에 한함)				
	7) 타이머 및 타이머스위치 (전자식에 한함)				
11.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케이블릴	○			
12.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누전차단기	○			
13. 절연변압기 ※ 정격용량 5kVA 이하인 것으로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 구조인 것은 제외	가. 변압기 및 전 압조정기	1) 전압조정기	○		
		2) 가정용소형변압기			
		3) 교류어댑터			
	나. 고주파웰더	○			
	다. 전기용접기	1) 전기용접기	○		
2) 총형아크접착기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14. 그밖에 제1호부터 제13호에 준하는 기기류	○			
<p>※ 비 고</p> <p>○ 제7호의 기자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 휴대용 전자계산기</p> <p>나. 능동 전자회로의 증폭기가 없는 헤드폰과 확성기(스피커)</p> <p>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 손목시계</p> <p>라. 적외선 통신방식의 원격제어기기(예 : TV 리모콘 등)</p> <p>마. 카메라 렌즈</p> <p>바. 배터리</p>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제3조제3항관련)

대상 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SAR
1. 측정·검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시험·측정용 계측설비류 (오실로스코프, 전계강도측정기, 스펙트럼분석기, 네트워크분석기 등으로 제2조제1항제6호의 정보기기 정의를 포함하는 것에 한함)	○			
	나. 휴대용 자동차진단기	○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류 (“산업용”이란 제품의 제조 또는 생산 공정 및 빌딩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가. 산업용컴퓨터	○			
	나. 산업용컴퓨터의 제어를 받는 산업용 설비	○			
	다. 기타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기자재	○			
3. 특정용도로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류	가. 전자식 운행기록계	○			
	나. 주차차단 제어장치	○			
4. 망 위해 영향이 적은 기자재류	가. 유선통신단말 및 방송공동수신설비	1) 접속 커넥터		○	
		2) 분기기		○	
		3) 분배기		○	
		4) 동축케이블		○	
		5) 보호기		○	
		6) 가입자보호기(CATV)		○	
		8) 광분배기		○	
		9) 광케이블		○	
		10) 직렬단자		○	

	나. 유선통신시스템 부속물류	1) 응답 서비스에 사용되는 집선장치	○		○	
		2) 시스템에 사용되는 부속물 및 구성품	○		○	
5. 전기철도기기류 :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			
6. 고전압설비 및 그 부속기기류			○			
7. 기타 다음 각 호의 기자재 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기자재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기자재 나. 별표 2의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기자재중 단서규정(정격입력, 출력전압, 정격용량, 소비전력, 정격전류 등) 이외의 기자재 및 특수조건의 기자재			○			

[별표 4]

사용자안내문

기종별	사용자안내문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표 5]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제23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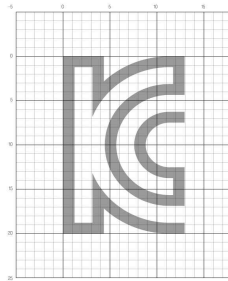


나. 식별부호 표시



다. 도안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 적합성평가표시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2) 색채

가)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권장하며 제품의 바탕색에 따라 사용한다.



나) 특수한 색채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 색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비고: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다) 다만 동 규정상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에 표시된 적합성평가표시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채를 사용할 수 있다.

2. 표시방법

- 가. 전과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평가정보는 제품이 소형이거나 또는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 라.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타인(打印)·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아.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 자.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차.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카. 식별부호 표시방법

M	S	I	P	-	C	R	M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①					②	③	④		⑤				⑥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 품 식 별															

①란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임을 나타내는 ‘MSIP’를 기재한다.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시험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시험분야	식별부호
무선분야	R (Radio)
유선분야	T (Telecommunication)
전자파분야	E (Electromagnetic Wave)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M (Multi Function)

④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신청자의 업종형태 구분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신청자 구분	식별부호
제 조 자	M (Manufacturer)
수 입 자	I (Importer)
판 매 자	S (Seller)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자로 기재한다.	

⑤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⑥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조립컴퓨터 소비자 안내문

(제18조제1항제1호 타목 관련)

1. 소비자 안내문

이 컴퓨터는 전자과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은 내장구성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것으로 완성품에 대한 전자과 적합성평가는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2. 표시방법

- 가. 소비자 안내문은 조립컴퓨터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게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소비자 안내문은 가로 10cm × 세로 2.5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가 가로 20cm × 세로 20cm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동일비율로 축소하여 표시할 수 있다.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3.19.>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 쪽)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신 청 기 자 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input type="checkbox"/> 예 (시험기관명 : _____ 시험접수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사용자설명서 1부. 3. 외관도 1부.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5. 회로도 1부. 6.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시험성적서

- 「전파법」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 또는 원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2.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4.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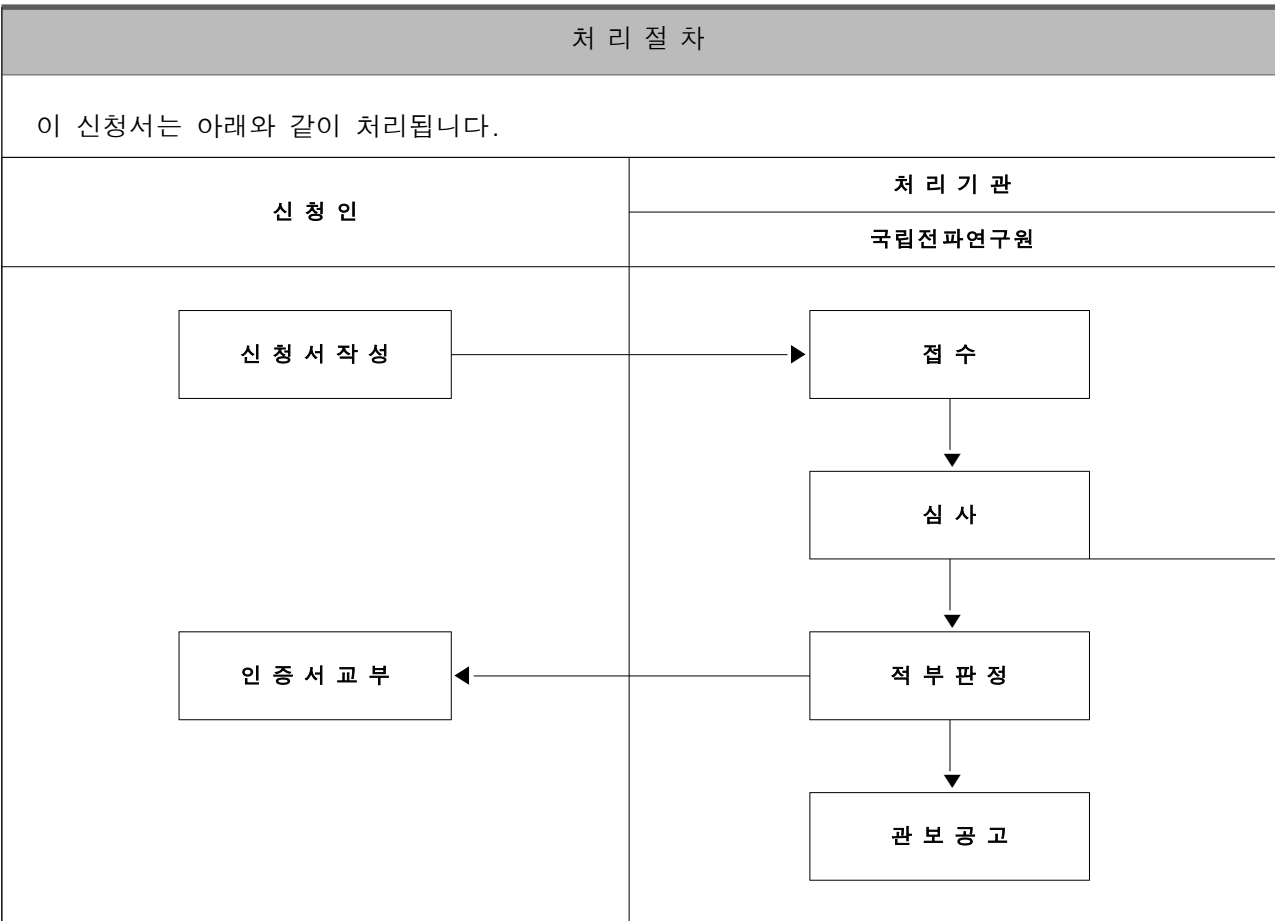
5. 회로도

- 전자파적합성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지정서(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 기 타

- o 수입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조자란에 외국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청인란에는 수입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 하십시오.
- o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둘 이상인 경우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		
	연 락 처	담 당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구 분	팩스번호	e-mail		
식별부호 신청순위	제 1 순 위	제 2 순 위		
	제 3 순 위	제 4 순 위		
	※ 식별부호는 신청순위에 따라 타 업체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 신청자 식별부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여권정보(개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부터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i>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i>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Applic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인증번호 <i>Certific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형식기호 <i>Type Identification</i>	
인증연월일 <i>Date of Certification</i>	
기타 <i>Others</i>	
<p>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2,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p> <p style="text-align: right;">년(Year) 월(Month) 일(Date)</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i>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i></p> <p style="text-align: center;">※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p>	

대리인 지정(위임)서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위임자	상 호 명			
	대표자 또는 인증업무 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신청 기자재	기자재명칭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가			

위 본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대리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대리인	상 호 명			
	사업자(법인)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주 소	(우)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담 당 자		E - m a i l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신 청 기 자 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등 록 방 식	<input type="checkbox"/>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기시험 적합등록 (시험장소 : _____) <input type="checkbox"/> FTA/MRA에 따른 적합등록 (시험기관명 : _____)		
	적합성평가기준 적 용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input type="checkbox"/> 예 (시험기관명 : _____ 시험접수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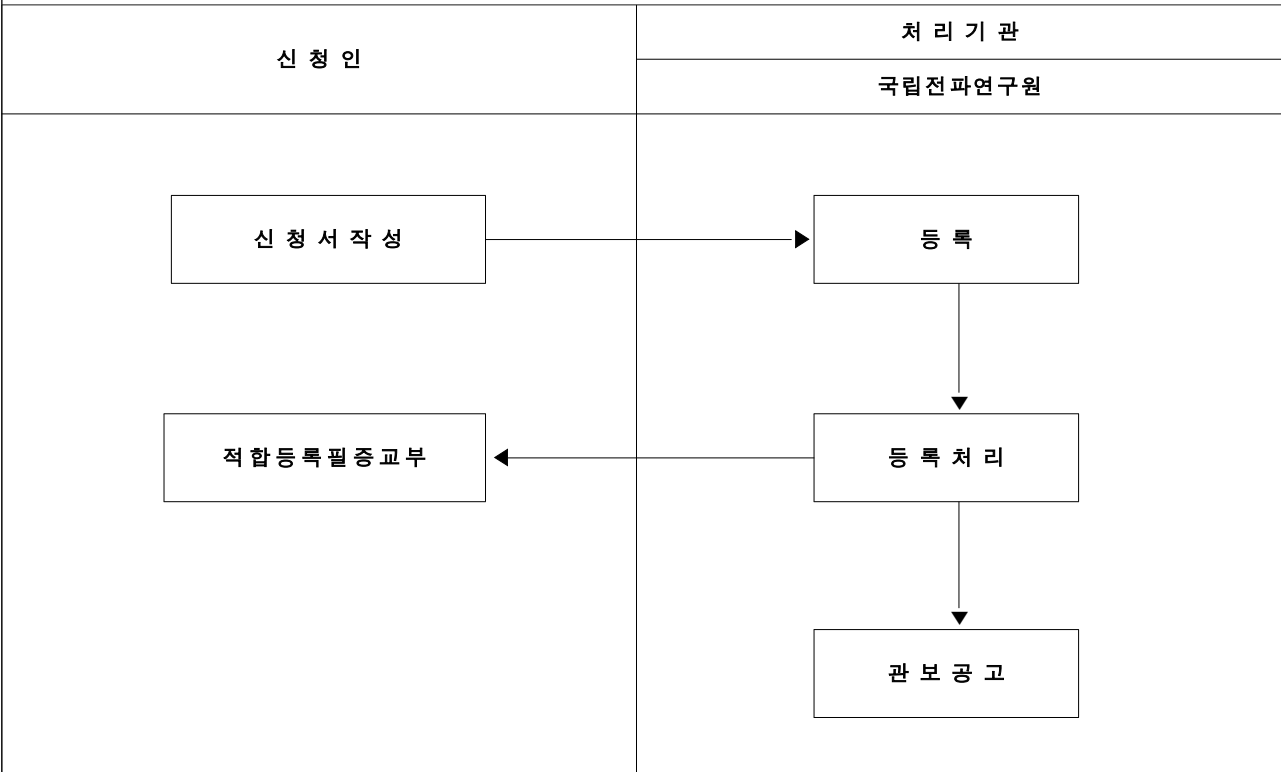
제출서류	1.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 대리인 지정서(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적합등록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1.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2. 시험성적서
 -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말합니다.
3. 사용자설명서
 - 기기의 개요·사양구성·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자파적합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용자안내문을 포함합니다.
4. 외관도(사진)
 - 제품의 전체 외관도를 말하며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6. 회로도
 - 제4조제1항제1호의 공통기준만을 적용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회로도 전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유선분야 기자재인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합니다.
7. 대리인 지정서(제27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등록기자재 정 보	상 호 명		대 표 자 명		
	주 소	(우)			
	업무담당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기자재명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 본 모 델 명		
	파생모델명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시험기관명		기 술 책 임 자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적합성평가 결과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등록기기 보완유무
적 합 성 평 가 정 보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상기의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는 해당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작성방법

1. 상호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2. 대표자명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3. 주소

- 적합등록 신청회사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업무담당자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5. 기자재명칭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의 기자재명칭을 기재합니다.(예 :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6. 제품식별부호

- 신청자가 관리하는 제품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7. 기기부호(형식기호)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기부호 및 형식기호 표시방법”을 참고합니다.

8. 기본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모델명을 기재합니다.

9. 파생모델명

- 적합등록 신청한 기본모델명 이외에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파생모델명을 기재합니다.

10. 제조자/제조국가

-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제조자를 기록하며, 제조국가는 제품이 생산된 국가를 기재합니다.

11. 시험기관명

- 적합성평가기준을 시험한 시험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기술책임자

- 시험성적서에 기재한 기술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13. 적합성평가 적용기준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에 적용한 해당규격을 기재합니다.(예 : KN22 전자파방사기준(B급))

14. 적합성평가 결과

- 적합성평가 적용규격(기술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기재합니다.

15. 보관서류의 구비현황

-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구비여부를 기재합니다.

16. 등록기기 보완 유무

- 적합등록 신청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과정에서 제품을 수정·보완사항(Debugging)이 있었는지 유무를 기록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	
기타 <i>Others</i>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자	상 호 명		식 별 부 호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우)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제조자 <input type="checkbox"/> 판매자			

신 청 기 자 재	기 자 재 명 칭		제 품 식 별 부 호	
	기 기 부 호 (형 식 기 호)		기 본 모 델 명	
	파 생 모 델 명			
	용 도			
	적 합 성 평 가 기 준 적 용 분 야	<input type="checkbox"/> 무선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EMC <input type="checkbox"/> SAR		
	사 전 통 관 시 험 신 청	<input type="checkbox"/> 예 (시험기관명 : _____) 시험접수번호 : _____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제 조 자		제 조 국 가	
	주 소	(우)		
기 타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설명서 1부. 2.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1부. 3. 사용자설명서 1부. 4. 외관도 1부. 5.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6. 회로도 1부. 7. 대리인 지정서(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수수료 전파법시행령 제97조의 2에 의한 해당 수수료
------	--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Applicant</i>	
기자재명칭 <i>Equipment Name</i>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잠정인증번호 <i>Interim Certification No.</i>	
제조사/제조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형식기호 <i>Type Identification</i>	
인증연월일 <i>Date of Certification</i>	
유효기간 <i>Validity</i>	
허용조건 <i>Permission Conditions</i>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interim certificated under the Clause 7,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년(Year) 월(Month) 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또는 5일)	
신고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적 합 성 평가사항	적합성평가의 종류	[] 적합인증 [] 적합등록	인증(등록)번호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또는성명	인증(등록)연월일		
	제 조 자	제조국가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파법」 제58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변경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험성적서(적합인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3.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폐업사실증명원	전파법시행령 제 97조의2에 의한 해당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 및 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접수일자
대상 기기	상호 또는 성명		적합성평가 분야
	기자재명칭		기본모델명
	적합성평가번호		적합성평가 연 월 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p>「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p>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①수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②위탁자 (신청인)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③신 청 기자재	제 품 명		모 델 명
	제 조 자		제 조 국가
	수 량		금 액
④ 통 관 세 관 명		⑤ 면제신청사유 (해당 조문)	
⑥ 면제 확인 번호		⑦ 사후관리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위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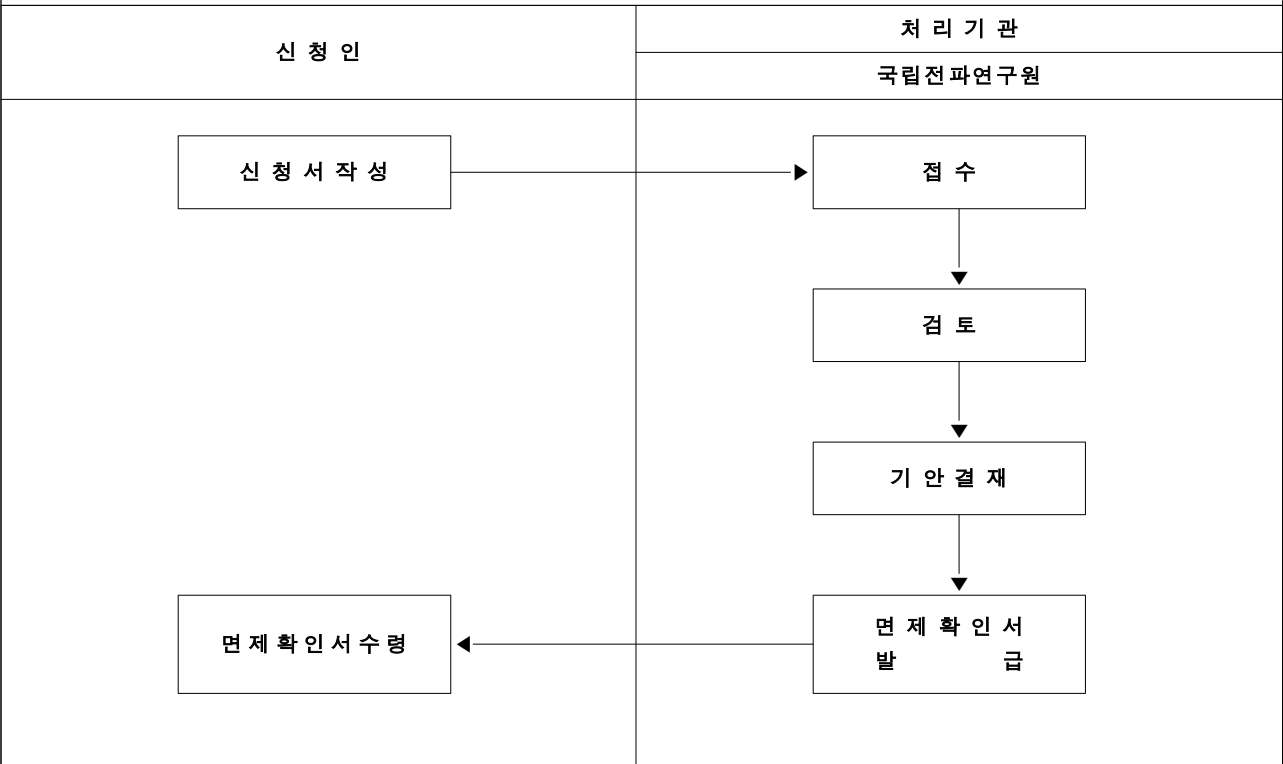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인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각 1부. <p>※ 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한정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2. 이 서식은 세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면제신청 기자재는 해당 요건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면제요건의 목적외로 사용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비서류 작성방법

- ① 수입자 : 위탁자의 의뢰를 받아 기자재를 수입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② 위탁자(신청인) : 수입된 기자재를 직접 사용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③ 신청기자재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신청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통관세관명 : 신청 기자재가 통관되는 세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⑤ 면제신청사유 : 제18조에 따른 면제요건 중 해당 면제사유 및 조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면제확인번호 : 면제 확인기관에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 ⑦ 사후관리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 적합성평가확인 [] 사전통관 신청(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①요건신청번호	②요건승인번호	③B/L번호	
④ 수입자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⑤ 수입화주	상 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우)	
⑥ 품 명			
⑦ 기자재명칭 (거래품명)			
⑧ 모 델 명	금 액		
⑨ H S 번 호	⑩ 인 증 번 호 (시험기관/신청번호)	⑪ 수 량	
⑫ 제 조 자	⑬ 제 조 국 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전파연구원장 귀하

귀하가 신청한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의한 적합성평가 사실 확인 또는 시험신청을 위한 사전통관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직인

유의사항

1.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신청을 하여 사전통관을 확인받은 기자재는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통관 한 기자재는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기자재로 분류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개정 2012. 9.24.>

적합등록 기자재의 구성품 확인서

신 청 인	주 소	(우)		
	사업자등록번호			
	업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번 호	
		E-mail	팩 스 번 호	
적합등록사항	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적 합 등 록 번 호		등 록 연 월 일	
	적 합 등 록 자 의 상호(또는 성명)			
구 성 품 확 인	기 자 재 명 칭		모 델 명	
	시 험 성 적 서 발 급 번 호		시 험 성 적 서 발 행 일 자	
	확 인 기 관			

위 방송통신기자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적합등록을 받은 컴퓨터 내장구성품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정시험기관의 장

직인

(앞 쪽)

제 호		
조사관증		
<table border="1"><tr><td>사 진</td></tr><tr><td>3cm × 4cm</td></tr></table>	사 진	3cm × 4cm
사 진		
3cm × 4cm		
성 명		
국립전파연구원장		

54mm × 86mm (PVC(비닐) 980.4g/m²)

(뒤 쪽)

조 사 관 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공무원은 「전파법」 제71조의2제 4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사항의 조사 또는 시험을 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table border="1"><tr><td>직인</td></tr></table>	직인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증은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즉시 국립 전파연구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